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1. 개요

<p>▣ 정의</p>	<p>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 (독일 식품용품법, German Food and Feed Code)</p>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제인증.</li> <li>- 유럽연합 규범을 준수하며 BfR에서 관련규격을 정하며 인증을 발행함.</li> <li>- 2005년 9월 LFGB 식품과 식품용품법이 식품 및 일용품법인 LMBG를 대체함.</li> <li>- 독일시장의 모든 식품, 그리고 식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일용품은 이 기본규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함.</li> </ul>
<p>▣ 인증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fR(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a href="http://www.bfr.bund.de/cd/template/index_en">http://www.bfr.bund.de/cd/template/index_en</a></li> </ul>
<p>▣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용 기기 (ex. 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음식물용기, 조리용기구 (냄비, 도마 등), 식사용품 (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li> </ul>
<p>▣ 적용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과 기타유럽</li> </ul>
<p>▣ 적용규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 Regulation 1935/2004</li> </ul>
<p>▣ 인증마크</p>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FGB는 2002년에 식품안전과 관련한 11개의 개별 법규를 ‘식품 및 농축산물의 원료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 독일의 법률체도로써 농축산물의 원료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일관된 흐름으로 관리하는 위생법으로 독일 등 유럽에 관련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받고 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li> </ul>

## 2. 인증배경

LFGB는 음식에 접촉하거나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하여 독성물질 또는 불순물 전달을 통해 건강에 위험하게 작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 취급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5년 9월, 독일의 새로운 식품과 음식용품 법 LFGB는 식품과 일용품 법 LMBG를 대체하였고, 《식품, 담배제품, 화장품과 기타 일용품 관리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독일식품 위생관리방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법률로서 기타 특정 식품위생법률, 법규제정의 준칙과 핵심이다. 독일 시장의 모든 식품, 그리고 식품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일용품은 이 기본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식품과 접촉하는 일용품은 테스트를 통해서, 독일 《식품과 일용품법》의 제30조와 31조에 부합해야 하고,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LFGB테스트, 즉 “화학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 보고증명이 있어야만 독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sup>1)</sup>

## 3. 관련기관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BfR

2002년 11월에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식품 및 사료 안전 등에 대한 전문적 보고 및 평가를 담당하는 독일 연방정부의 과학기관(Scientific Agency)이다. BfR은 소비자의 안전 및 식품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국(Federa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 BMELV)에 관련내용을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과학적 평가 및 조사에 있어서는 독립적 업무를 수행한다.

## 4. 규제법규 및 품목

LFGB 신 규정은 총 11 조항에 73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럽의 식품관련 규정인 1935/2004을 반영하였다. 세부 규정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bundesrecht.juris.de/bundesrecht/lfgb/gesamt.pdf>

LFGB 파트 30 & 31 규정에 해당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 음식용 기기 (ex. 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 음식물용기, 조리용기구 (냄비, 도마 등)

---

1) [www.ponytest.com](http://www.ponytest.com)

- 부엌기기 (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
- 직물, 패션소품 등
-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장난감
- 직물이나 실로 만든 수공예품, 화장품, 담배

## 5. 인증절차

EC 규정이나 국가 규정 준수 확인은 원재료 제조업체가 공표해야한다. 원재료 내의 특정 물질의 전이 및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한도를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제시한 증명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적합성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은 아래와 같다.

- 일반 제조 공정 및 재료 체크 / 감각 진단: 맛과 냄새 전달
- 플라스틱: 전체 전이, 국부 전이, 중금속 함량
- 실리콘: 전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
- 금속: 구성, 추출가능 중금속
- 기타: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기타 재료 또는 응용분야

## 6. Contact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Press and Public Relations Office

Thielallee 88-92

14195 Berlin

- 홈페이지: [http://www.bfr.bund.de/cd/template/index\\_en](http://www.bfr.bund.de/cd/template/index_en)
- E-Mail: [pressestelle@bfr.bund.de](mailto:pressestelle@bfr.bund.de)
- Fax: +49-30-18412-4970